

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1. 11. 22

문교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결 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1년 11월 12일

○ 회부일자 : 1991년 11월 13일

다. 상정일자 : 제73회 임시회

○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(1991. 11. 21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중등교육국장 나세용)

가. 제 안 사 유

청소년들의 교양증진, 소질개발, 정서순화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
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
하기 위하여, "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"를 제정
하고자 함.

나. 주 요 골 자

- 1) 청소년 문예활동의 공간과 공연장 (연극, 영화, 음악등)을 제공하여 문화, 예술활동 등을 장려하고 인격도야를 위한 도서실을 운영함.
- 2) 조직으로 관장, 총무과, 운영과, 도서과를 두며, 관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함.
- 3) 학생회관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하되 회관의 설립 목적에 상응하거나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사용료 감면율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한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김영만)

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바,

가.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해 학생회관은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은바 있으나, 당초 제출 승인안인 관장을 "지방서기관"에서 「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한 수정조례안」의 내용은 동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 기 승인사항에 저촉되며 또한 제42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교육기관의 공무원 배치는 당해 시·도의 교육비 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도 대통령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음.

나. 또한 동법제40조제5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타 시.도(광주,전주)의 경우 관장이 지방서기관으로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균형유지에도 문제가 있음.

다. 그러므로 충청북도교육감의 명의로 제출된 충청북도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4조 1항의 「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되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」 라는 조항을 "장학관 또는"의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*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나, 당초 제출자의 서류 및 제안설명과 조례안을 비교해본 결과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명백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재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문교사회위원회에 재 회부하여 주실것을 동의 합니다.

* 제출자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(교육기관의 설치) 제1항과 제2항 및 제42조(공무원의 배치)에 의거 교육부에 승인 요청을 했어야하나 제42조 부분을 누락한 채 조례안을 승인요청하였고 (단, 혹시 타 시.도의 경우를 보아 이부분을 보완하여 협조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) 교육부와 총무처간에 협의하여 대통령령에 명백한 규정을 명시, 개정하여야 가능한 부분인 국가공무원인 장학관을 보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점은 상위법(제42조 제2항)에 명백히 위배됨.

4. 질의답변 요지 및 성명

질의자	요지	답변자	요지
박기양 차주원 권용하	○ 전문위원의 수정안을 들어보니 법률에 위 배되는데 하자는 없 는지 ?	중등교육 국장	○ 당 교육위원회에서 의결 한 사항이며, 내부적으 로 확정단계에 있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임.

5. 토 론 요 지 :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 조례안 자체의 절차상의 하
자 문제로 정회, 위원들과 교육청측의 의견 교환이 있었
음.

6. 심 사 결 과 : 원 안 가 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, 제42조 (별첨)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1부.

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

(1991. 3. 8)
(法律 第4347號)

第2節 補助機關 및 所屬教育機關

第40條 (補助機關) ①教育監 밑에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는 副教育監을 두되,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②副教育監은 당해 市·道教育監이 추천한 者를 教育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.

③副教育監은 教育監을 補佐하여 事務를 처리하며, 教育監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.

④教育監 밑에 필요한 補助機關을 두되, 그 設置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⑤教育監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機關의 設置·운영에 있어서 合理化를 도모하고 다른 市·道와의 均衡을 유지하여야 한다.

第41條 (教育機關의 設置) ①教育監은 그 所管事務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 드는 당해 市·道の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教育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.

②教育監이 第1項의 教育機關을 당해 市·道の 條例로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教育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第42條 (公務員의 配置) ①教育監의 補助機關과 第41條 第1項의 教育機關 및 第43條의 下級教育行政機關에는 당해 市·道の 教育費特別會計가 부담하는 經費로써 地方公務員을 두되, 그 定員은 法令과 教育部長官이 정한 基準에 의하여 市·道の 教育規則으로 정한다.

②教育監의 補助機關과 第41條 第1項의 教育機關 및 第43條의 下級教育行政機關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公務員을 둘 수 있다.